##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28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 : 한병도·임미애·채현일

김병주 · 임호선 · 이해식

이원택 · 신정훈 · 안도걸

박정현 • 위성곤 • 양부남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조치 및 피해 자 생계지원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의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농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재난 이후의 경제활동 회복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역공동체의 장기적 해체와 생계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이후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회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항목에 산업용·상업용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비 지원을 추가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조 및 제66조).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을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안정,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및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로, "정한다"를 "정하며, 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 9. 산업용·상업용 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 10.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

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	
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	
·복구하여 <u>일상으로 회복할</u>	<u>일상으로의 회복과</u>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u>.</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③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u>안정 및</u>	<u>안정, 피</u>
<u>피해기업의 경영 안정</u> 을 위하	해기업의 경영 안정 및 피해지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역의 경제 회복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신 설>

#### <신 설>

<u>9.</u>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0 /취레기 기수)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용ㆍ상업용 시설에 피해
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의 복
구를 위한 지원
10.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
 비 지원
11. (현행 제9호와 같음)
<del></del>
<ul><li>④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li></ul>
<u>및 제11호에</u>
7] 그
<u>정하</u>
며, 제3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
른 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